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83호로 2026년 1월 19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은 정보 습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의 보급과 활용은 필수적임. 관내 시각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안 제1조 ~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안 제4조 ~ 제6조)
- 다.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 사용, 점자 보급과 지원(안 제7조 ~ 제8조)
- 라. 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마.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안 제11조 ~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점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6. 1. 20.~2026. 1. 2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점자의 이용·학습·문서 작성 등에 제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입법·사법·행정 영역은 물론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를 공식적인 문자로 인정하는 등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점자법」이 제정(2016. 5. 29., 시행 2017. 5. 30.)됨.

○ 한편,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1)92.9%가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점자도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2)생활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기관·시설에서의 점자 사용에

1) 매우 중요함 69.3%, 중요함 23.6%, 보통 6.3%, 중요하지 않음 0.6%, 전혀 중요하지 않음 0.2%

2) 필요도: 생활 편의시설(4.53), 지역사회 기관 또는 시설(4.47)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공공 영역에서의 점자 지원 확대 필요성이 확인됨.

- 아울러, 조사 결과에서는 점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45.0%)’와 더불어 ‘관련 정책 및 법규 강화(30.0%)’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영등포구 차원에서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점자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점자 인식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한편, 영등포구의 시각장애인은 2026년 1월 기준 1,496명으로 파악됨.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조례 전반에 걸쳐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준용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축물·공중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점자

만족도: 생활 편의시설(2.27) 지역사회 기관 또는 시설(1.63)

사용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이는 법 3)제4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함.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는 법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구 차원의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실태조사)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 인식 수준, 점자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안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를 규정하고,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적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 안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는 공공 및 민간 행사에서의 점자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3)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 반환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에 대해 제작·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점자 자료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의 문화·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한편, 집행부서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해당 시설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신규 시설 조성을 유도하고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는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경우 「점자법」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함. 이는 점자 공문서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행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는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점자문화 확산을 도모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는 점자 인식개선, 점자교육, 점자 사용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2조(한글 점자의 날)는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자 사용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24년 점자 사용 양상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점자도서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 ▲생활 편의시설 및 지역사회 기관·시설에서의 점자 사용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 점자 사용 환경의 미비점과,
 - ▲점자 홍보 및 표기 확대 ▲관련 정책·법규 강화 등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공공건축물·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점자 사용 ▲점자의 보급 및 지원 ▲점자문화 확산 ▲민간 단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과 점자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점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